

어린이 보호



1.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 2015-300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2. 쿠키뉴스 발행인 변 재 운

〈주문〉

서울신문(seoul.co.kr) 2014년 12월 22일자 「출생 2시간 만에 버려진 영아, 개미떼 공격받고 중태」 제목의 사진, 쿠키뉴스(kukinews.com) 12월 22일자 「태어나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려져 ‘개미떼’ 습격에 중태 빠진 아기」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서울신문, 쿠키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신문)= 『출생 2시간 만에 버려진 영아, 개미떼 공격받고 중태



갓 태어난 아기가 개미떼에 물려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 보팔에서 최근 벌어진 일이다. 학교 경비원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한 아기를 발견했다.

가느다랗게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경비원은 처음엔 노는 아이들의 소리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게 심상치 않았다.

경비원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살살 걸어갔다. 경비원은 “울음소리가 길 건너 쓰레기통 쪽에서 나길래 다가가보니 쓰레기통 안에 갓난아기가 버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상황은 끔찍했다. 아기의 몸에는 개미가 잔뜩 달라붙어 있었다. 일부 신체 부위에선 개미의 공격을 받아 피가 흐르고 있었다. 경비원은 “아기가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끔찍한 광경이었다”고 말했다.

다행히 아직 아기는 숨을 쉬고 있었다. 경비원은 개미떼를 털어내고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응급치료를 받은 아기는 목숨을 건졌지만 아직 병원의 보호를 받고 있다.

아기는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기를 쓰레기처럼 버린 건 다름 아닌 엄마였다. 경찰에 따르면 여자는 혼전임신을 한 미혼모였다.

임신 후 남자친구에게 버림을 받고 혼자 아기를 출산했다. 미혼모에게 쏟아질 따가운 시선을 걱정한 여자는 아기를 낳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렸다.

여자는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게 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미러』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22601002>>

(쿠키뉴스)= 『태어나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려져 ‘개미떼’ 습격에 중태 빠진 아기

인도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쓰레기통 속 개미떼에 물려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영국 매체 미러는 “인도 보팔 지역의 한 학교 쓰레기통에서 태어난 지 두 시간도 안 된 신생아가 개미떼에 물린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아기를 발견한 학교 경비원 아메드 칸은 “정말 끔찍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쓰레기 틈에서 발견된 아기의 몸 위에 개미떼가 기어 다니며 살점을 물어뜯고 있었다”며 “개미떼에 뒤덮인 아기의 온몸에서 피가 흘렀다”고 전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아기는 곧장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도 위태로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에서 아기를 유기하는 여성의 모습을 확인한 후 수사를 벌여 해당 여성을 체포했다.

경찰 대변인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떠나자 미혼모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기 위해 아기를 버린 것 같다”며 “체포된 여자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972200&code=41131111&cp=nv>>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인도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쓰레기통 속 개미떼에 물려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도 그리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사진이다. 머리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아기의 모습이 끔찍하고도 혐오스럽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갓난아기가 개미떼에 물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생명경시와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

부터 어린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3016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선닷컴 발행인 김 찬

〈주문〉

조선닷컴(chosun.com) 2015년 1월 20일자 「10살 딸 생매장 시도한 아빠, 충격과 분노」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선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0살 딸 생매장 시도한 아빠, 충격과 분노』



▲ 10살 난 딸을 생매장하려던 인도 남성이 체포되었다. 이 남성의 범죄 시도가 알려지면서 이웃 주민들은 물론 세계 네티즌들이 크게 분노했다. 다행히, 몸의 절반이 묻혀 있던 여자아이는 이웃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비정한 아빠는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넘겨지기 전, 이 남자는 이웃들에게 두들겨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금요일 오후 인도-방글라데시 국경지역인 트리푸라 푸티아 마을에서 일어났다. 이 마을에 사는 아들 후세인은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 9살 난 딸을 묻기로 작정했다. 자신의 집 뒷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딸을 묻은 것이다. 딸은 손이 묶인 채 가슴팍까지 땅에 묻혔다. 집에 돌아온 부인은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웃들은 딸을 구조했다. 또 이웃들은 범행을 시도한 남자에게 매질을 가했다.

아들 후세인은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넘겨졌다. 자신의 자식이 딸이라는 이유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사건은 인도 언론을 통해 알려졌으며, 이후 SNS 등을 통해 소개되면서 분노와 충격을 유발하고 있다. 김○○ 기자/PopNews』

〈http://photo.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0/2015012000927.html〉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조선닷컴 홈페이지의 〈포토/동영상〉 코너에 게재된 것으로, 팝뉴스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인도-방글라데시 국경지역인 트리푸라 푸티아 마을에서 이 마을에 사는 남자가 부인이 집을 비운 사이, 9살 난 딸을 생매장하려 했다는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딸은 손이 묶인 채 가슴까지 땅에 묻혔다.

문제는 한 어린이가 양손이 묶인 채 땅속에 묻혀 꼼짝 못하고 있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진이다. 가슴까지 묻힌 어린이의 눈은 가려졌으나 묶인 양손은 고스란히 노출됐다. 땅에 묻힌 채 도움을 간구하는 절박한 얼굴 표정도 그대로 실렸다. 범죄자의 수감이나 포승도 가리고 보도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5-3026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닷컴 발행인 차 준 영

<주문>

세계닷컴(segye.com) 2015년 1월 30일자 「[영상] 도로 한 복판에서 집단 칼부림 패싸움 '왜?」」 기사의 사진과 영상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세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도로 한복판에서 집단 칼부림 패싸움 '왜?』



중국 장시성 도로 한복판에서 두 폭력조직이 집단 칼부림 패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26일(현지 시간) 중국 보도 매체인 아이 핑 닷컴(ifeng.com)에 따르면 중국 장시 성 가오안이(高安)의 루이양(瑞陽) 한 도로에서 10여 대 승용차에서 2~30명의 남성이 차에서 내려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액션영화를 연상케 하는 집단 패싸움은 지역 이권을 두고 두 계파의 조직폭력배들이 난투극을 벌렸다. 영상을 보면 차 안에 남아있던 폭력배들은 차를 이용해 상대를 뒤쫓아 사고를 내기도 한다. 시민들은 현장을 보고 놀란 운전자들

은 현장을 벗어나려 했지만 도로가 막힌 상태라 여의치 않았다.

장시 성 현지 경찰은 “이들의 정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범행에 사용됐거나 피해를 입은 차량도 버려진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1.23사건 특별 조사팀’ 을 신설하고 수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사진/영상=nexttv1000, youtube」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1/30/20150130001081.html>)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게시물은 세계닷컴 국제뉴스 난에 오른 것으로, 중국 장시성 도로 한복판에서 두 폭력조직이 집단 칼부림 패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을 동영상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영상에는 도로에서 10여 대 승용차에서 내린 20~30명의 남성들이 집단 난투극을 벌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있다.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하는 집단 패싸움이다. 이 영상도 문제이지만, 영상이 끝난 뒤 각종 폭력 영상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집단 패싸움을 하는 영상도 있고,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집단 폭행을 하는 영상도 있다.

영상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지 못해 나타난 실수로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사는 청소년 유해물을 게시하지 않거나 발견 즉시 삭제하는 등 관리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